#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 및 위자료등

[서울고법 2013. 4. 25. 2012르3326,3333]

#### 【판시사항】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국민연금법 제64조)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甲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 사례.

##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제64조

##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사건본인(반소원고)】

【제1심판결】서울가법 2012. 10. 10. 선고 2011드합3701 판결

【변론종결】2013. 3. 7.

#### 【주문】

1

1.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재산분할로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제1, 2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 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이유]

###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한정된다.
-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유]

####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한정된다.
-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유]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한정된다.
-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